

## 기록연구직렬 제도화를 위한 현실적 조치

지수걸\*

1. 왜 기록관리 전문가가 필요한가.
2. '기록연구 직렬'을 신설하자.
3. '공무원 총정원제'는 걸림돌이 아니다.
4. 기록관리 전문요원, 수요가 없으면 공급도 없다.
5. 정부·학계·시민사회단체 모두가 나서야 한다.

### 1. 왜 기록관리 전문가가 필요한가?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으로 줄여 씀)은 국가기록 관리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그것을 통해 중요 기록을 잘 남겨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위 법률은 기록관리 전문기관의 설립과 더불어 각급 공공기관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하 기록관리 전문가)을 의무적으로 배치할 것을 규정하고

\* 공주대 기록관리대학원 주임교수

- 1) 기록관리법에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위상은 '기록관리자(records manager)'와 아키비스트를 포함하는 의미로 규정되었다. 즉 아카이브즈의 아키비스트와 자료관의 기록관리자 모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에 포함된다.

있는데, 이런 규정들은 법 정신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처들이라 말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기록관리업무는 그 성격상 상당한 전문성을 요하며, 그렇기 때문에 기록관리 담당자는 기록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흔히 말하는 기록유산이란, “아키비스트(archivist)가 기록보존소에 영구히 자리를 차지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 기록”<sup>2)</sup>을 의미하는 바, 이는 기록을 평가·선별하는 행위, 기록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정리(arrangement)·기술(description)하는 행위는 고도의 전문성을 구비한 기록관리 전문가가 담당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한번도 기록관리 전문가를 공공기관에 채용한 적이 없다. 심지어는 국가기록을 총괄 관리하는 정부기록보존소조차에서 법령상 자격을 갖춘 인력을 별로 갖추고 있지 못한 형편이다.<sup>3)</sup>

기록물관리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제도의 핵심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는 기록관리학을 전공한 자를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으로 규정한 뒤 이들을 각급 기록물관리기관에 배치할 것을 의무화한 점이다. ‘역사학과 문헌정보학 석사학위 이상자 가운데 행정자치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기관을 수료한 자’를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으로 규정한 이유는, 대학원 과정을 통해 기록관리학 전공자가 정식으로 배출되기 이전까지, 관련 학문 석사학위 소지자들을 일정기간 교육하여 먼저 생기는 기록관리기관에 배치함으로써, 공공 기록물 관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함에서였다. 이는 관련 학문을 전공한 자로서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는 소정의 교육

---

2) Hans Booms, “Society and the formation of a documentary heritage; issues in the appraisal of archival sources”, *Archivaria* 24, 1987.

3) 김학준, 「한국기록관리제도의 현황과 과제」,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제6차 정책포럼발표문, 2002.10, 10쪽.

과정을 거치면 그 나름대로 전문성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근거한 것이다. 기타 군·검찰청·경찰청 등에 예외 규정을 둔 이유는, 법령 제정 시기 해당 기관들이 자기 업무의 특수성을 앞세우며 일반 공공기관과 다르게 취급해 줄 것을 고집했기 때문이다.

둘째, 전문요원이 각급 공공기관에 배치되는 시한을 중앙행정기관은 2004년 말까지, 지방행정기관은 2006년 말까지 유예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충분한 소양을 갖춘 기록관리 전문가가 양성되려면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염두에 둔 규정이라 할 수 있다.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과 배치시한에 관한 규정은 이처럼 기록관리법 시행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임용방법에 대한 규정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 이런 문제 때문에 그동안 시행도 해보지 않은 시행령을 개정하려 한다든가, 아니면 여러 이익집단들에 의해 ‘백가쟁명’식으로 임용방법에 대한 논의가 무성하게 제기되어 여러 가지 갈등이 야기된 바 있다. 본고에서는 이런 점들을 충분히 감안하면서 전문요원제도를 어떻게 현실화, 구체화시켜야 할 것인가를 따져보고자 한다.

## 2. ‘기록연구 직렬’을 신설하자!

2000년 1월 기록관리법 시행 이후,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제도의 정착을 위해 정부기록보존소가 한 일이라고는, 관련 학회와 아무런 논의도 거치지 않은 채 2000년 11월 느닷없이 시행령상의 전문요원 관련 조항을 고치려 했던 것뿐이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시행령 제40조(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과 배치)의 내용 일부를 개정하여, 공공기관의 소속 공무원 및 직원들에게도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의 기록물관리 교육과정(정부기록보존소가 단기적으로 운영하는 교육 과정)을 이수하면 전문요원 자격을 부여한다는 것이었다. 물론 위의 시도는 관련 전문가나 학계의 반대로 실현되지는 않았으나 많은 후유증을 야기하였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이후 기록관리 전문가를 각급 공공기관에 배치하려는 시도는 어느 곳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개혁을 이끌어 가야 할 정부기록보존소가 오히려 자신의 입지를 좁히는 자충수를 둔 꼴이었다. 위의 악수로 말미암아 정부기록보존소는 개혁에 대한 명분도 잃고, 추동력 또한 상실하고 말았다. 그 이후 전문요원제도와 관련한 논의는 아무런 합의점도 찾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을 뿐이다.

공공 박물관과 도서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가가 학예직과 사서직 제도를 운영하고 있듯이 기록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면, <표 1>과 같이 학예직군 안에 ‘기록연구 직렬’을 신설하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일반직 공무원’<sup>4)</sup> 가운데 연구직으로 배치해야 한다.

물론 위와 같은 주장에 이견을 제시하는 이들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위의 방법 말고는 다른 해결책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발표자의 생각이다. 생산적인 논의를 위해 그동안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제기된 여러가지 이견들의 문제점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

---

4) 일반직 공무원은 일반행정·연구 등의 업무에 종사하며 직군·직렬별로 구분된다. 계급은 1급부터 9급까지로 구분되며, 그 가운데 연구직 공무원은 연구관과 연구사로 나뉘어진다.

<표1> 연구직 공무원 직급표

직 군	직 렬	직 류	계급 및 직급	
			연구관	연구사
1. 학 예	학예연구	학예일반 미술 국악 국어	학예연구관	학예연구사
	편사연구	편사	편사연구관	편사연구사
	기록연구	기록관리	기록연구관	기록연구사
2. 광공업 ...	공업연구 ...	...	...	...

첫째, ‘별정직’으로 임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별정직 공무원’은 ‘정무직 공무원’·‘계약직 공무원’ 등과 마찬가지로의 ‘특수경력직 공무원’이다.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신분보장이 되지 않는 공무원이며, 계급구분·승진·전보·전직 등의 개념이 없다. 보수와 복무는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다. 예를 들면, 국회전문위원, 비서관 등이 이 범주에 속한다. 그러나 ‘별정직 공무원’은 정원 내에서 임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록관리 연구직렬을 신설하는 것보다 그 실현은 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별정직 공무원을 일반직으로 임용할 때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sup>5)</sup> 그동안 기록관리제도의 문제점으로서, 업무담당자—순환직렬인 행정직 등—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각급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업무가 일관성이 없었다는 점, 기능직·별정직 공무원 등 직급이 낮은 공무원들이 주로 기록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는 점 등이 손꼽아져 왔다. 이를 감안하면, ‘별정직 공무원’으로 기록관리 전문가를 각급 공공기관에 배치하자는 주장은 법률 제정의 기본정신이나 취지에도 어긋난다 할 수 있다.

5) ‘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 제8조.

둘째,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하자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물론 이런 방법을 택하는 경우, 각급 공공기관의 직제 개정이 없이도 전문요원 임용이 가능할 수 있다. 계약직 공무원제도가 만들어진 이유는 정부조직 내에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특정업무를 '일시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라 할 수 있다. 즉 계약직 공무원은 3년 범위 내에서 계약에 의해 채용된다. 이런 대목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계약직 공무원은 '일시적'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이들에게 기록관리 업무를 맡기는 경우 기록관리 업무의 전문화는 실현 불가능한 목표가 되고 만다. 예를 들어, 기록관리 전산시스템 개발과 같은 한시적인 사업을 하는 경우 일부 계약직을 임용할수도 있으나 전문요원은 그래서 안된다. '계약직' 주장은 전문요원제도를 만든 기본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셋째, 학예연구직 또는 편사연구직으로 먼저 임용한 뒤, 기회를 보아 차후 직렬 신설시 전직하게 하자는 의견, 혹은 사서직 공무원을 전직시키자는 의견 등이 있을 수 있다. 현재의 기록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역사학이나 문헌정보학 석사학위 이상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인 한국기록관리학교육원 과정을 이수하면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하지만 문헌정보학을 전공한 사람은 학예연구직이나 편사연구직에 응시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학예연구는 국문학, 고고학, 민속학, 역사학, 미술학(회화·조소 및 공예에 한한다), 건축학(건축사를 포함한다), 음악(기악·성악 및 작곡을 말한다)을 전공한 자로 한정되어 있고 편사연구는 역사전공자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sup>6)</sup> 따라서 위의 방안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많을뿐더러, 임용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법령에 따라 어떤 형태로든 기록관리학 과정을 이수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사

6) 「공무원 임용 및 시험 시행규칙」 <별표 1-2> 참조.

서직 공무원을 전직케 하자는 의견도 이런 이유 때문에 성사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된다.

넷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범주를 학부 졸업생, 문헌정보학·역사학 전공자 이외에 다른 학문의 석사 소지자에게도 확대하자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물론 자료관과 기록보존소의 업무는 기록의 수집·이관, 정리·기술, 평가·선별, 보존·폐기 등 다양한 영역이 존재하기 때문에 각 부문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의 학부과정에서는 문헌정보학이나 역사학, 또는 기록관리학의 일부 과목만이 교수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학부 졸업생에게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을 부여하는 문제는 기록관리학의 학문적 정체성 확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제이므로, 추후의 과제로 남겨두는 것이 옳을 듯하다. 또한 다른 학문을 전공한 자에게도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을 부여하자는 의견, 예를 들면 보존직에게도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을 부여하자는 의견도 있을 수 있으나 이런 문제는 기존의 공업연구직 등의 임용방법으로도 얼마든지 해결이 가능하다고 본다. 모든 기록관리기관 종사자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라면, 전문요원이라는 용어 자체가 불필요하다. 불필요한 잡음과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업무를 ‘정리·기술을 포함한 기록물 평가·선별 업무’로 명확히 규정해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상의 검토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듯이,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제도를 현재의 법령 틀 내에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새로운 ‘기록연구’ 직렬이 신설되어야 한다. 또 ‘석사학위 이상자’로 자격이 규정되어 있는 이상 그에 상응하는 직급체계—연구사—를 마련하려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기록연구 직렬’을 신설하는 것 이외에 다른 해결 방안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발표자의 생각이다.

### 3. '공무원 총정원제'는 걸림돌이 아니다 !

기록관리 전문가를 임용하는 방법으로 '기록연구' 직렬을 신설하는 것에 동의한다면, 다음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기록관리 전문가를 실제로 각급 공공기관—자료관 설치대상기관, 전문관리기관—에 배치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대책과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럴 때 당장 부각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바로 「국가공무원 총정원령」(대통령령 제 16326호) 문제이다.

「국가공무원 총정원령」(이하 '총정원령'으로 줄여 씀)은, “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의 최고 한도를 규정”함으로써 정부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목적 하에서 제정되었는데, 위 법령은 국가공무원 정원의 총한도를 '27만 3,982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자치부장은 총정원의 범위 안에서 정원운영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3년마다 정원감축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sup>7)</sup>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도 결국은 '총정원령'의 입법취지에 따른 규정이라 할 수 있는데, 이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정원관리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정원(표준정원)의 범위 안에서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은 행정자치부가 정하게 되어 있다.

위의 법령과 규정을 고지식하게 받아들이면 전문요원 배치가 이에 저촉되는 것으로 이해할수도 있다. 그러나 '기록연구 직렬' 신설이 결코 '총정원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표준정원' 규정과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총정원령을 실시하면서 정부가 표방한 '작은 정부'란 결국 전문성과 효율성의 극대화를 통해서만 구현할 수 있는 목표

7) 최초의 정원감축계획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기 때문이다. 가령, 행정자치부(행정관리국 조직정책과)의 「2002년도 정부조직 관리 지침」에는, 그동안 견지하여온 정부조직 및 인력의 감량기조는 지속적으로 유지하되,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했을 때는 인력을 보강한다는 기본원칙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런 원칙에 근거해 볼 때도 전문요원 충원에는 아무런 문제가 있을 수 없다. 게다가 위의 지침에는, 신규인력 증원은 법률의 제·개정이나, 대규모 시설·장비의 증설 등으로 새로운 행정업무와 수요가 발생한 경우에 국한”한다는 방침, 또는 “과학·기술·연구 등 전문가 위주의 직위를 확대하여 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방침 등도 확인되는바, 이런 방침들은 기록연구 직렬을 신설하지 않는 행위가 오히려 더 범 정신에 어긋나는 것임을 보여준다. 이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던듯이, 새로운 행정수요에 따른 신규인력 증원은 가능하고 또 필요한 것이므로, 행정자치부나 정부기록보존소는 어렵다고만 말하지 말고 전문요원제도가 하루 빨리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대한의 배려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 4. 기록관리 전문요원, 수요가 없으면 공급도 없다.

기록관리법에 따르면,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기록관리기관 전체 인원의 1/4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은 아직도 자료관을 설치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sup>8)</sup> 설립된 자료관들도 평가·분류 등 전문적인 기록관리 업무는 거의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미 자료관을 설립한 기관조차도 전문요원의 필요성을 거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기에 앞서 당연히 선행되어야 할 전문요원

8) 2001년 6월 현재 45개 기관에서 자료관을 설치함.

수요조차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그러나 인력 수요가 불명확하다고 하여 ‘기록연구’ 직렬을 신설하지 못한다는 논리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자료관 설립 대상기관에 최소한 1명 이상의 전문요원이 배치되어야 한다면 최소한 800명 이상의 ‘전문요원’이 필요하다. 여기에 정부기록보존소·국회, 도나 광역시 등 기록관리전문기관을 설립해야 하는 공공기관들을 포함하면 소요 인원은 1,000여 명이 훨씬 더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sup>9)</sup>

그러면 이렇게 많은 전문인력을 어떻게 충당할 것이며, 또 임용 이후 이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 것인가? 이렇게 문제를 제기할 때 당연히 나올 수 있는 답은, 우수한 인재들이 기록관리 전문요원을 지망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임용된 전문요원들이 장기간 최선을 다하여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기록연구 직렬’을 신설하는 것 등일 수밖에 없다. 질높은 교육과정이 만들어지고, 우수한 인재들이 그 과정을 이수하고, 동시에 기록연구 직렬이 신설되어 ‘전문요원’이 실제로 업무 현장에 배치되는 단계가 되면 우리나라의 기록관리 수준은 몰라보게 달라질 것이라 믿어진다.

최근 기록물의 생산과 관리가 전자적 환경에서 이루어지면서, 장래에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역할이 더욱 미미해질 것이라는 의견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이런 의견은 기록관리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다. 전자기록을 모두 서버에 담아두기만 하면 언제든지 검색·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커다란 착각이다. 또한 계속 엄청난 예산을 들여 서버를 증설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전자기록도 다른 기록들

---

9) 이원규는 법령에 정해진 모든 공공기관에 전문관리기관이나 자료관이 만들어질 경우, 전문요원 소요인원이 2,785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바 있다. 이원규, 『한국기록물관리제도의 이해』, 진리탐구, 2002, 62쪽 참조.

과 마찬가지로 평가·선별과정을 거쳐야 제대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다. 이는 ICA의 전자기록관리 원칙만을 보아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sup>10)</sup>

- 전자기록관리와 종이기록관리의 역할과 목적은 동일하다.
- 기록보존소는 진본임이 확실하고 신뢰성 있고 보존성이 있는 전자 기록물의 생산과 보관을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해 보존기록물을 생산하고 보관하는 전자기록물 시스템의 기록물 생명주기 전 과정에 걸쳐 반드시 개입하여야 한다.
- 기록보존소는 기록물 생산자들이 신뢰성 있고 보존성이 있는 진본 기록물을 생산하고 보관하도록 확실하게 보장해야 한다.
- 기록보존소는 반드시 보존기록물에 대해 가치 평가 작업을 수행해야 하고 지적인 통제를 수행해야 한다.
- 기록보존소는 보존 전자기록물이 항상 이용 가능하고 이해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보존과 이용에 관한 관리 요구사항을 명백하게 규정해야 한다.

위 원칙의 핵심은 전자기록도 기록이 생산되는 초기단계부터 기록 관리 원칙에 입각하여 관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록물의 생산과 관리가 전자적 환경에서 이루어질수록 오히려 기록관리 전문가의 업무 영역이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다. 21세기 정보화시대를 제대로 열어가려면 능력있는 기록관리 전문가를 다수 확보해야 한다.

---

10) 이상민, 「전자기록물의 관리원칙 : 전자정부의 초석」, 『기록보존』제13호, 132~133쪽.

## 5. 정부·학계·시민사회단체 모두가 나서야 한다.

기록관리법은 상당히 개혁적인 입법인 까닭에 잘 실행하기만 하면, 행정의 효율성·책임성·투명성을 제고하는데는 물론이고 우리사회의 정치문화(자치문화, 소통문화)를 발전시키는데도 크게 기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의 행정(재정 및 인력, 법령 및 정책) 지원 미비, 정부 각 기관의 인식 결여와 준비 부족 등으로 말미암아 법령의 실행이 마냥 지연되고 있는 형편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와 학계와 시민단체는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다음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첫째, 정부기록보존소는 기록관리법과 시행령에 근거하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배치 문제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그것은 정부기록보존소가 2000년 11월 시행령 개악을 시도한 이후, “단기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직 공무원’들이 ‘기록관리 전문요원’직을 대부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의구심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둘째, 행정자치부는 소속기관인 정부기록보존소가 기록관리 전문가를 기록관리법에 따라 각급 공공기관에 배치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을 증원하고, 또 정부 각급 기관이 기록관리기관을 설립하는 경우 예산을 보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셋째, 학계에서는 우수한 기록관리 전문가가 양성될 수 있도록 표준 교과과정을 개발하는 등 짜임새 있는 교육과정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우리 사정’에 맞는 기록관리학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학자들 간의 ‘학계간 연구’를 활성화해야 한다. 역사학과 문헌정보학이 각기 따로 기록관리 전문가를 양성하는 체제는 지양해야 한다. 역사학·문헌정보학계는 학문적 이기주의를 버리고 한국의 공공기록관리가 발전

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해야 한다.

넷째,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감시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야 한다. 법령대로 기록관리기관을 설립하고 있는지, 기록관리 전문가를 배치하고 있는지, 기록을 제대로 등록하고 있는지, 어떤 기록을 폐기하고 있는지, 또 기록을 잘 활용·공개하고 있는지 등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문제가 있을 때는 이를 정면으로 문제삼으며 그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러한 행위는 투명행정, 책임행정, 효율행정을 확립하는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 누차 경험했듯이, 기록관리가 안되면 부정부패도 막을 수 없다.

우리 모두 다시 한번 되물어야 한다. 기록은 제대로 남겨지고 있는가? 법대로 기록관리기관은 설립되고 있는가? 기록관리 전문가는 배치되고 있는가? 어느 것도 실현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아직도 '기록관리법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해야 옳을 것이다.

